

제 호

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단체의 명칭:
2. 기관·단체의 대표자:
3. 센터의 명칭:
4. 센터의 대표자:
5. 센터의 소재지: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·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